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속권 상실신고제도의 도입 등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0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안 제1004조의2 등)	4
2. 대습상속 규정 정비(안 제1001조 등)	17
3.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도입(안 제1115조의2 등)	23
4.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외(안 제1112조)	29
5.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안 제1118조)	31
6. 관계기관 의견	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 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

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1조).

- 나.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제2항).
- 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2 신설).
- 라.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3 신설).
- 마.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4 신설).
- 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 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Ⅲ. 검토의견

1. 상속권 상실신고제도 도입(안 제1004조의2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자가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 피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04조의2 신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04조의3 신설),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 상속권 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00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u> <u>1.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u>

현행	개정안
	<u>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u> <u>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u> <u>2.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u> <u>3.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u> <u>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u> <u>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u>
<u><신설></u>	<u>제1004조의3(상속재산의 관리) ① 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u> <u>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04조의4(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나. 현행 상속제도의 개요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

현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사망 후 재산 분배에 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①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한 후(상속인 확정), ②상속인의 성별·피상속인과의 관계·혼인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균분하는 “균분상속제도”를 따르되 보충적으로 배우자 가산,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하고 있음(상속재산 분배).

첫째, 상속인 확정의 경우, 현행 「민법」 제1000조¹⁾와 제1003조²⁾에

-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1순위),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2순위), ③형제자매(3순위), ④삼촌·고모·외삼촌·이모·사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됨. 다만, 「민법」 제1004조³⁾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동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됨.

[현행 「민법」 상 법정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비고: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은 상속인에서 제외됨		

둘째, 상속재산 분배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균분(均分)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민법」 제1009조제1항), ①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50% 가산된 상속분을 지급하고(「민법」 제1009조제2항)⁴⁾, ②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3)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가산함(「민법」 제1008조의2)⁵⁾).

한편, 현행 「민법」의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제1004조에서는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피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등의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방임·학대 등을 행한 친족에 대해 상속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다.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및 개정 「민법」의 내용

제21대 국회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제출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①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 등을 추가하여 상속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과⁶⁾, ②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⁷⁾으로 구분되었음.

위 법률안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는 총 3차례 법안심사소위(2023년 8월 31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5월 7일)를 거쳐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6) 서영교의원안(의안번호 제2100070호), 이태규의원안(의안번호 제2109874호), 윤재갑의원안(의안번호 제2122638호), 민홍철의원안(의안번호 제2105118호), 이명수의원안(의안번호 제2107619호)

7) 양정숙의원안(의안번호 제2113279호), 박재호의원안(의안번호 제2103257호), 신영대의원안(의안번호 제2101386호), 정부안(의안번호 제2110864호), 정점식의원안(의안번호 제2122898호), 서영교의원안(2108076호)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제21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영교의원안⁸⁾이 재발의되었고, 유사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성원·정점식의원안⁹⁾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하였는데, 제21대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 결과와 동일하게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¹⁰⁾이 마련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7.) 및 본회의(2024. 8. 28.)를 통과하였음¹¹⁾.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8) 서영교의원안(의안번호 제2200064호)

9) 김성원의원안(의안번호 제2200408호), 정점식의원안(의안번호 제2202538호)

10) 법제사법위원장안(의안번호 제2203266호)

11)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임.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 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라.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¹²⁾을 통해 유류분 규정과 관련하여 단순위헌,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¹³⁾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였음.

12)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1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둘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제3호¹⁴⁾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셋째,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²¹⁵⁾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1118조¹⁶⁾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14)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5)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6)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마.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자가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 피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 대상을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는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을 통해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을 고려하여 직계존속을 제외한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에 관하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앞서 ‘다.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및 개정 「민법」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는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이미 반영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됨¹⁷⁾.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을 하였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개선 입법을 요구하였는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관련 법안심사소위 당시 직계존속을 제외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하여는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¹⁸⁾.

직계존속을 제외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17)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임.

18) 제22대 국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8. 27.) 회의록 참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¹⁹⁾과 그간 논의 연혁에 비추어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목차 ‘3.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도입(안 제1115조의2 등) 다. 검토의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둘째, 개정안 제1004조의3(상속재산의 관리)은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7항 및 제8항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셋째, 개정안 제1004조의4(용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

19) 백혜련의원안(의안번호 제2200161호), 권칠승의원안(의안번호 제2200409호)

하고,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0864호)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상속권 상실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앞서 ‘다.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및 개정 「민법」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대습상속 규정 정비(안 제1001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姊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같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생략) ② 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第1010條(代襲相續分) ① 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같음하여 相續人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相續分에 依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相續分の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나. 현행 「민법」상 대습상속 관련 규정

현행 「민법」에서는 대습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²⁰⁾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1001조에서는 직계비속의 대습상속권을²¹⁾, 제1003조제2항에서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²²⁾을 규정하고 있음.

- 20)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21)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2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이러한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분을 살펴보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받고(제1010조제1항),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제1009조²³⁾의 규정에 의하여 균분하게 상속되고,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제1010조제2항)²⁴⁾.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속결격이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대습상속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상속의 이익을 누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 등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손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을 인정할지 여부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임.

된다.

- 2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24)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민법」 상 대습상속 사유와 개정안의 비교]

구분	사망	상속 결격	상속권 상실
현행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3항	대습상속 인정	대습상속 인정	미규정
개정안	대습상속 인정	대습상속 제외	대습상속 제외

다만, 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과 같이 상속 결격과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찬성)하는 측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대습상속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상속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²⁵⁾.

반면, 상속 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습상속권은 대습상속인의 고유한 권

25)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0864호)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상속 결격과 상속권 상실 모두를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리고, 상속권 상실자의 잘못을 이유로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²⁶⁾,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자의 상속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직계비속의 상속은 원할 수 있음에도 대습상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습상속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864호)에서는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모두를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바,

법안심사소위 과정²⁷⁾에서 법원행정처는 대습상속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하나, ①현행법상 상속결격은 상속관계에 있어 비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결격 해당여부는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②대습상속권은 피대습인의 상속권을 대위하거나 승계하는 권리가 아니고 법률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 ③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손자녀의 상속을 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습상속 요건에서 상속 결격 및 상속권 상실선고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습상속제도 개정방향에 대

26) 이동진, “상속결격·상속권상실과 대습상속”, 가족법연구(제35권제2호), 2021. 7.

27) 제21대 국회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3. 8. 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3. 11. 15.),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5.7.)

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현행법과 같이 상속결격의 경우도 대습상속을 유지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관련 논의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관계기관의 의견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도입(안 제1115조의2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

현	행	개 정 안
		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나.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개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법정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 함.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함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함.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결정

“유류분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써,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함.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권은 잠재적인 권리로서 일종의 기대권 내기 기대적 지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 양도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에 의하여 이를 보전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면 잠재적인 권리에서 구체적인 유류분권으로 바뀌고 유류분 침해사실이 확정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함²⁸⁾.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살펴보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

28) 민유숙, 『주석 민법(상속)』, 2020. 7. 695면.

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임²⁹⁾).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상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개정으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신고)가 신설되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권 상실 청구를 통해 상속권의 일부인 유류분권 역시 박탈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 4 등)과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신고) 개정 관련 법안심사소 위 당시 직계존속을 제외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하여는

29)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헌법재판소 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및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제4호에 규정 되어 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관련 규정은 삭제됨.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³⁰⁾, 상속권 상실제도 및 유류분 상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을 위해서라면 상속권 상실제도가 아닌 유류분 상실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이 있어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기를 희망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경우 생전의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사실상 상속을 배제할 수 있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함³¹⁾. 또한, 헌법재판소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을 한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반면에, 우리나라 「민법」은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는 상속제도가기 때문에 상속분과 유류분을 분리하여 유류분만을 박탈하는 것이 개념상 불가능하며, 유류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오로지 상속인만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과 유류분을 분리하여 유류분만을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정상속인으

30) 제22대 국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8. 27.) 회의록 참조

31) 김상용, 박인환,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23집제1호, 2021.3. 박인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상속권 제한의 입법 방향”, 서영교의원실 주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3. 8. 21.

로부터 유류분을 박탈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존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류분을 박탈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존증여에 의해 처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회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를 분담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유증이나 증여와 같은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유류분 침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 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³²⁾.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민법」 개정을 통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도입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제3호에 대한 결정이었던 점, 현행 「민법」상 상속법 체계에서 상속권 상실제도와 유류분 상실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안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현소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가족법연구 제35권제3호, 2021. 11. 이동진, “상속결격·상속권상실과 대습상속-민법 개정안 비판”, 가족법연구 제35권제2호, 2021.

4.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외(안 제11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第1112條(遺留分の 權利者と 遺留分) 相續人の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 3. (생략) 4. 被相續人の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の 3分の 1	第1112條(遺留分の 權利者と 遺留分)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원래 유류분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는 등의 노동을 함께 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하였던 시절에, 집안의 가장인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유언이나 증여에 따른 재산의 무상처분으로

부터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되었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중간 생략…)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03266호)이 20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4년 9월 20일 공포(법률 제20432호)되어 이미 법률에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5.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안 제1118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8條(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 준용한다.

나. 현행 「민법」상 기여분 결정 청구 규정 및 유류분의 준용 규정

현행 「민법」 제1008조의2³³⁾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그 기여분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다시 앞에서 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보도록 함(제1항).

33)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바(제2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제1013조제2항) 또는 피인자의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제4항), 현재는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거나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³⁴⁾.

한편, 「민법」 제1118조³⁵⁾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1001조(대습상속)³⁶⁾,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³⁷⁾, 제1010조(대습상속분)³⁸⁾의 규정을 유류분에 있어서 준용하고 있으나,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음.

34)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5)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36)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37)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8)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검토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이 없어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³⁹⁾,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⁴⁰⁾.

이러한 현행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

3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6)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08조의2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이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중간 생략...)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간 생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상속인이 기여분 결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에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이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준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제1118조에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함에 비추어 제1118조(준용)를 개정하는 방안과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를 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입법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이 제1008조(준용)에 제1008조의2(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현행법상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41)에 따르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여 생전증여되거나 유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안으로 제1008조의2 준용 규정 외에 제1008조의2제3항도 함께 정비하여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거나⁴²⁾,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한 증

41)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42) 이동진,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제1호(2019.3.) 참조.

여·유증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등⁴³⁾의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⁴⁾.

다음, 현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 민사 사건이고, 기여분 결정심판청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⁴⁵⁾에 해당하여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인바, 소송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양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⁶⁾.

43) 윤진수, “유류분과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선입법의 방향”, 법률신문 2024년 8월 3일자 기사 참조.

44) 법원행정처도 유사 의견을 제시함.

45)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4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가사사건화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8198호)」에서는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등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건을 동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판결과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8198호)」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①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나. 「민법」 제839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일 것

3. 제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⁴⁷⁾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논의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161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0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71호)

현행	박지원의원안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생략)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013조 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8條(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준용한다.

6.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2024. 8. 28. 본회의 통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 등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류분 상실을 별도로 입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유류분도 상실하므로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상실 선고의 중복 규정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점, 유류분 상실 선고를 받아도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이 남아 있어 패륜 상속인에 대해 완전한 상속분 박탈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속결격·상실자의 대습상속을 부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상속결격·상실을 대습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개인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속결격·상실시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해외 입법례(독일, 프랑스, 일본 등)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